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0. 0. (제 회)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1970년 제정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유형과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고,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제3조, 제4조)
- 1) 신입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별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2) ‘관리자로서 역할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본교육훈련의 취지에 맞게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총경·경정·경감까지로 정하고, 경위·경사 기본교육은 폐지함
- 3) 현행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었던 전문교육훈련 수강 의무를 ‘총경’ 계급까지 확대, 경찰서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휘역량향상과정 등을 이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나. 교육훈련 과정의 수료기준(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정하고, 신입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이 정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출

업하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다. 교수요원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제19조부터 제22조)
-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할·자격기준·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객원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경찰공무원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시행 책임을 부여함 (제28조부터 제32조)
- 마. 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자 선발, 대상자의 의무, 복귀명령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 (제33조부터 제39조)
- 1) 연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위탁교육훈련을 도모하고자 함(제33조)
-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제35조)
-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지시사항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복귀명령 및 그 절차를 규정함(제36조)
-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

합(제37조)	대통령령 제 호	훈련을 말한다.
5)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소요경비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체적 환수 대상·기준 및 환수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38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제3조(교육훈련의 구분) 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입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바. 그 밖에 현장학습모임 운영(제8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에게 임용 전에 신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일정, 인력수급관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 후에 신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전부개정령안 별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을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

④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⑤ 기타교육훈련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한다.

⑥ 자기개발 학습은 경찰공무원이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으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제3조에서 정한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신입교육훈련과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에 상응한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직장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이로써 신입교육훈련 또는 기본교육훈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훈련은 직장훈련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으로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통해 실시한다.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경찰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신입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4. 교육훈련 과정보다 대상 및 인원
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직

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 및 응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2. 직무 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교육훈련기준시간 및 교육훈련의 내용 등을 계급별·경과별(警科別)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국장·부장·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하 “부서장”이

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부서장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달성, 자기개발 학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8조(현장학습모임의 운영) ①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또는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현장학습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현장학습모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현장학습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이력정보와 자기개발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이력 등 교육훈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비의 지급) ①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여비 외에 입학금·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제도 개선 등) ① 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과정)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 과정, 대상 및 기간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과정별 목표, 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계획
4.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 계획
5.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방법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계급, 담당 직무,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훈련 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훈련 과정별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교육훈련 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교육훈련 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 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퇴교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해당 교육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대리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4. 생활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6. 교육훈련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7.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교수요원 등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1. 강의 및 교육훈련
2. 교재연구 및 집필
3.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및 성적의 평가
4. 담당 교육훈련 분야 직무연구

5.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20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 후보자를 분야별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내로 모집하여 교육·관리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교수요원 등의 자격기준)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자격, 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강의경력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선발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경사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

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22조(교수요원의 역량강화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교수요원의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교수요원의 전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제24조(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학칙등”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1. 입교, 퇴교, 상벌에 관한 사항
2. 성적평가 및 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제25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에 관한 사항
5. 제27조에 따른 수탁교육을 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위촉·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생활관 입실)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칙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

식을 제공한다.

제27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직장훈련

제28조(직장훈련계획) 경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2.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교육훈련
3.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권총·전자충격기 등 훈련
5.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제29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

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0조(직장훈련담당관) ①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4.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경찰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2조(직장훈련 운영규칙) 직장훈련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장 위탁교육훈련

제33조(위탁교육훈련계획) 경찰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교육훈련기간
3. 위탁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5.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34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위탁교육훈련 분야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4. 휴직 중이 아닌 사람

제35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위탁교육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위탁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준수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교육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위탁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 ④ 위탁교육훈련을 마쳤거나 제36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 ⑤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복귀명령)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5조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교육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제37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2. 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위탁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제38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지급된 교육훈련비(여비를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5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6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37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청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훈련 성과가 부진할 경우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비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한 학위취득 또는 교육훈련 과정 이수 등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39조(위탁교육훈련 운영규칙) 위탁교육훈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0조(준용)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계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처분·절차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처분·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3조(신입·기본·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신입·기본·전문교육을 받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입·기본·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진행 중인 신입·기본·전문교육은 제3조에 따른 신입·기본·전문교육훈련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승진시험 응시 대상 및 급속승진 및 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해당 계급 근무연수 ×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나.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산출 기준일: 10월 31일
3. 파견·휴직 기간 및 기관 간 전보자 처리
 -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

에서 제외한다.

- 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의 경우 전보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같은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다.
4.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 처리: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승진된 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 3150 - 0935